

학익1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8. 3. 20 ~ 3. 23(4일)
- 감사범위 : 2015. 4. 1. ~ 2018. 3. 31. 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감사반원 : 감사팀 3명
- 중점 감사사항
 - 주민센터 운영실태 전반
 - 세출예산 집행실태 및 물품구입 등 적정여부
 - 저소득층 생활보호지원 대책의 효율적 추진실태
 - 각종업무(서무,주민등록,민방위,청소 등) 추진실태

☐ 감사결과 내역

구 분	처분 현황 (건)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	비 고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세입)	환급· 감액		
계	10	10	3	7	22	22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불임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

○ 동호회 등 수강료 부적정 지원 내역

[기간: 2015. 4. 1. ~ 2018. 3. 22.]

(단위: 원)

지원 대상	연 도 별 지 출 현 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지출액	사용내역
동아리(○○○○○○)	800,000	960,000	1,000,000		2,760,000	공연복, 악기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1,150,000				1,150,000	버스임대, 입장료, 강사비 등
합 계	1,950,000	960,000	1,000,000		3,910,000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7항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년 2회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사용의 범위로 1. 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2. 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등 구입비 3.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등 구입비 4. 센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5. 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비용 6.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 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표1]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지원은 남구학산문화원의 「학산 마당예술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각 동 주민센터별 마당예술동아리와 결합 연계하는 행사로 2014년 12월 1일 학익1동주민센터(동장 박○○)와 남구학산문화원(원장 이○○) 간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동아리 교육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홍보비 등을 학산문화원에서 지급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연 시설지원 및 인력지원,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이었으나, 동 주민자치센터 정규프로그램과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연복 구입 명목으로 8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2016년 960천원, 2017년 1,000천원을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매년 공연복을 구입하는 등 당초 협약조건과 다르게 총 2,76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지원 부적정 내역

[기간: 2015. 4. 1. ~ 2018. 3. 22.]

(단위 : 원)

구분 연도	지 출 현 황				지 원 근 거		
	지출일	지출액	채주	세부내역	위원회 의결	연간계획 반영	협약서
2015년	2015.09.15	800,000	김○○	공연복 16벌	○		○
2016년	2016.05.11	960,000	이○○	남방 20장 리버스9플로탐3개		○	○
2017년	2017.11.13	1,000,000	이○○	공연복 20벌		○	○
합 계		2,760,000					

- 또한, [표2]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행사 지원 사항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2015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계획」을 수립 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추진한 사항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7호 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조례 제5조(기능)의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임차료, 중식비 및 강사비 등을 명목으로 계상하여 2015년에는 1,15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표2]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행사」 지원 부적정 내역

[기간: 2015. 4. 1. ~ 2018. 3. 22.]

(단위 : 원)

구분 연도	지 출 현 황				지원 근거	
	지출일	지출액	채주	세부내역	위원회 의결	연간계획 반영
2015년	2015.04.17	500,000	(주)○○○관광	45석 차량1대 임차료	○	
	2015.04.17	100,000	○○인쇄사	현수막 워크샵교재 제본	○	
	2015.04.17	100,000	김○○	강화교려재단 인문학 강사비	○	
	2015.04.18	50,000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평화전망대 입장료	○	
	2015.04.18	400,000	김○○	중식비	○	
	합 계	1,150,000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관련규정 준수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경비 지원 범위 내에서 집행되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주민자치분야

-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등)에 의하면 사용료 등의 환불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 또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는 사용료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를 전액 환불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1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따로불임1과 같이 2017년 77건 285,360원, 2018년 14건 45,980원 총 91건의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처리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익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황○○)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수강 시작 후 15일 전 취소의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였고, 15일부터 31일까지 취소 시에는 1월분을 공제하여 환불 처리하는 등 임의대로 기준을 정하여 331,340원의 수강료를 부적정하게 환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시켜야 하고, 일제정리에 따른 전수조사는 전 세대에 대한 세대별 명부를 작성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학익1동에서는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학익1동-356호, 2016.1.12)」을 수립하여 공무원과 통장을 합동 조사반으로 편성하여 2016.1.15. 부터 2016.2.2. 까지 19일간 전 세대에 대한 1차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등록 불일치 의심자에 대하여는 선별하여 2016.2.3. 부터 2016.2.15. 까지 개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1차 사실조사는 전수용 세대명부에 세대주(원)에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원)의 인 없이 통(반)장이 대신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학익1동에서는 2016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면서 34통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50세대에 대한 세대주(원)의 서명 확인 없이 통장 도장 날인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직권조치 시 관련규정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하시고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주민등록

-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의 날인 또는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제7조에는 증지수입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 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학익1동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징수하면서 [별표]와 같이 최소 1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지연하여 구금고에 납입하였다.
- 또한, 2015. 7. 10.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신고 등에 따른 수수료 13건, 42,900원을 신용카드로 징수하였고, 이에 따른 신용카드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2015. 7. 17. 학익1동사무소 계좌(신한, 100-***-*****)에 입금되었다.
-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입금된 금액 전액을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2015. 7. 30. 42,900원 중 20,600원만을 입금하고, 차액인 22,300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입금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 납입에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관련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수수료 납입 지연 현황

(단위:원)

연번	수입일자	내용	카드사 입금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금액	지연 일수	비고
1	2015-05-0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1	2015-05-12	2015-05-26	9,500	9	
2	2015-05-0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2	2015-05-13	2015-05-26	26,500	8	
3	2015-05-0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3	2015-05-14	2015-05-26	45,900	7	
4	2015-05-0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4	2015-05-15	2015-05-26	41,300	6	
5	2015-05-0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5	2015-05-18	2015-05-26	44,300	5	
6	2015-05-1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8	2015-05-19	2015-05-26	11,000	4	
7	2015-05-1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19	2015-05-20	2015-05-27	53,500	4	
8	2015-05-13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0	2015-05-21	2015-05-27	21,700	3	
9	2015-05-1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1	2015-05-22	2015-05-27	25,600	2	
10	2015-05-15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2	2015-05-26	2015-05-27	15,000	1	
11	2015-05-1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7	2015-05-28	2015-06-09	64,800	8	
12	2015-05-20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8	2015-06-01	2015-06-09	27,100	6	
13	2015-05-2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5-29	2015-06-01	2015-06-09	45,800	6	
14	2015-05-2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6-01	2015-06-02	2015-06-09	32,200	5	
15	2015-05-2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6-02	2015-06-03	2015-06-09	19,000	4	
16	2015-05-2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6-03	2015-06-04	2015-06-09	24,800	3	
17	2015-05-2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6-04	2015-06-05	2015-06-09	83,600	2	
18	2015-05-2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5-06-05	2015-06-08	2015-06-23	40,700	11	
19	2016-08-0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09	2016-08-10	2016-08-17	28,600	4	
20	2016-08-03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0	2016-08-11	2016-08-17	34,600	3	
21	2016-08-0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1	2016-08-12	2016-08-17	41,100	2	
22	2016-08-05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2	2016-08-16	2016-08-30	42,800	10	
23	2016-08-0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6	2016-08-17	2016-08-30	67,900	9	
24	2016-08-0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7	2016-08-18	2016-08-30	32,000	8	
25	2016-08-10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8	2016-08-19	2016-08-30	51,600	7	
26	2016-08-1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19	2016-08-22	2016-08-30	49,200	6	
27	2016-08-1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2	2016-08-23	2016-08-30	20,200	5	
28	2016-08-1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3	2016-08-24	2016-08-30	75,100	4	
29	2016-08-1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4	2016-08-25	2016-08-30	24,300	3	
30	2016-08-1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5	2016-08-26	2016-08-30	24,400	2	
31	2016-08-1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6	2016-08-29	2016-09-13	61,700	11	

연 번	수입일자	내 용	카드사 입금일자	납부기한	납부일자	금액	지연 일수	비고
32	2016-08-2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29	2016-08-30	2016-09-13	71,300	10	
33	2016-08-23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30	2016-08-31	2016-09-13	36,700	9	
34	2016-08-2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8-31	2017-09-01	2016-09-13	82,100	8	
35	2016-08-25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9-01	2017-09-02	2016-09-13	66,300	7	
36	2016-08-2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9-02	2016-09-05	2016-09-13	45,000	6	
37	2016-08-2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9-05	2016-09-06	2016-09-13	37,800	5	
38	2016-08-30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9-06	2016-09-07	2016-09-13	44,800	4	
39	2016-08-3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6-09-07	2016-09-08	2016-10-05	46,000	15	
40	2017-04-03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0	2017-04-11	2017-04-24	81,600	9	
41	2017-04-0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1	2017-04-12	2017-04-24	17,200	8	
42	2017-04-05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2	2017-04-13	2017-04-24	88,600	7	
43	2017-04-0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3	2017-04-14	2017-04-24	38,700	6	
44	2017-04-0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4	2017-04-17	2017-04-24	74,300	5	
45	2017-04-10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7	2017-04-18	2017-04-24	82,100	4	
46	2017-04-1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8	2017-04-19	2017-05-02	49,100	8	
47	2017-04-12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19	2017-04-20	2017-05-02	52,900	7	
48	2017-04-13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0	2017-04-21	2017-05-02	41,900	6	
49	2017-04-1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1	2017-04-24	2017-05-02	59,200	5	
50	2017-04-1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4	2017-04-25	2017-05-02	78,600	4	
51	2017-04-1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5	2017-04-26	2017-05-12	85,800	9	
52	2017-04-19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6	2017-04-27	2017-05-12	44,100	8	
53	2017-04-20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7	2017-04-28	2017-05-12	89,900	7	
54	2017-04-21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4-28	2017-05-02	2017-05-12	61,400	6	
55	2017-04-24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5-02	2017-05-04	2017-05-17	35,300	8	
56	2017-04-25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5-04	2017-05-08	2017-05-17	43,400	7	
57	2017-04-26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5-08	2017-05-09	2017-05-17	81,600	6	
58	2017-04-27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5-10	2017-05-11	2017-05-17	53,300	4	
59	2017-04-28	인증기수입(카드분)	2017-05-11	2017-05-12	2017-05-23	82,800	7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민방위 당연제외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민방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 대상자,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는 제외된다.
- 아울러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5급으로 판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군복무 또는 예비군 등이 면제되어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되고, 6급으로 판정되면 군복무, 예비군 및 민방위까지 편성 제외며, 7급으로 판정되면 재신체 검사 대상으로 등급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만 20세부터 민방위대로 편성·관리, 이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학익1동에서는 아래 [표1]와 같이 전시근로역, 재신체 검사 판정자 12명을 기타 당연제외자, 군인,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의 사유로 당연제외자로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표] 민방위대 당연제외자 부적정 편성 현황

연 번	성명	생년월일	당연제외 정보		병역처분 확인결과		비고
			제외일자	사유	일자	처분내용	
1	박○○	-	2012-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7.11.24	재신검	
2	송○○	-	2012-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7.10.25	전시근로역	
3	김○○	-	2013-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5.12.24	전시근로역	
4	윤○○	-	2014-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5.02.03	전시근로역	
5	이○○	-	2015-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6.01.26	전시근로역	
6	이○○	-	2015-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6.03.21	전시근로역	
7	이○○	-	2016-01-01	현역병입영대상자	2017.09.25	전시근로역	
8	연○○	-	2017-01-05	현역병입영대상자	2017.11.20	재신검	
9	윤○○	-	2010-01-01	군인(병역의무자)	2016.10.13	전시근로역	
10	고○○	-	2014-06-25	군인	2014.12.04	전시근로역	
11	성○○	-	2017-01-05	사회복무요원	2016.05.10	전시근로역	
12	구○○	-	2017-01-11	군인(병역의무자)	2017.11.13	전시근로역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민방위 당연제외자 자원편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착오 편성된 민방위 자원은 재편성 후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회계

신분상조치 기관경고

- 지방재정법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고,
-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51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③항에 의하면 지출원은 (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살비 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 인천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조례 14조(실비변상) 제1항에 따르면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동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통장 기본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학익1동에서는 통장수당 지급 시 정당한 채주인 각 통장에게 통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통장자율회장은 44명의 통장 자율회비 모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월 지급되는 각 통장의 수당에서 통장자율회 회비(2만원~4만원)를 공제하고 공제된 총액을 통장자율회장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고,
- 이에, 주민센터 회계담당자는 [표]와 같이 2015.4월부터 2018.2월까지 35회에 걸쳐 매월 통장수당 품의 시에는 각 통장에게 월정수당 2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품의

하고, 재정 프로그램 (e호조)에 지출품의 등록 시에는 각 통장에게서 공제한 회비 (2만원 : 29회, 3만원 : 5회, 4만원 : 1회) 총액을 통장자율회장 계좌 [2015.4월~2015.12월 : 정○○(학익1동 통장), 2016.1월~2018.2월 : 강○○(학익1동 통장)] 로 입금하고, 통장수당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각 통장의 계좌로 입금하여 통장수당을 지출 처리 하였다.

[표] 통장 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연 번	적 요	품 의			지 출		
		일자	대상	금액(원)	일자	대상	금액(원)
1	2015.4월 통장수당지급	2015.4.16	1통장 외 43명	8,787,100	2015.4.17	1통장외43명	7,907,1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2	2015.5월 통장수당지급	2015.5.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5.20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3	2015.6월 통장수당지급	2015.6.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6.19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4	2015.7월 통장수당지급	2015.7.14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7.15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5	2015.8월 통장수당지급	2015.8.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8.19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6	2015.9월 통장수당지급	2015.9.17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9.18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7	2015.10월 통장수당지급	2015.10.19	1통장 외 42명	8,600,000	2015.10.20	1통장외42명	7,320,000
						정○○ (학익1동통장)	1,280,000
8	2015.11월 통장수당지급	2015.11.19.	1통장 외 43명	8,838,710	2015.11.20	1통장외43명	7,528,710
						정○○ (학익1동통장)	1,310,000
9	2015.12월 통장수당지급	2015.12.17.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5.12.18	1통장외43명	7,920,000
						정○○ (학익1동통장)	880,000
10	2016.1월 통장수당지급	2016.1.19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1.20	1통장외43명	7,490,000
						강○○ (학익1동통장)	1,310,000
11	2016.2월 통장수당지급	2016.2.23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2.23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12	2016.3월 통장수당지급	2016.3.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3.18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13	2016.4월 통장수당지급	2016.4.21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4.21	1통장외43명	7,060,000
						강○○ (학익1동통장)	1,740,000
14	2016.5월 통장수당지급	2016.5.20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5.20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00,000
15	2016.6월 통장수당지급	2016.6.17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6.20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00,000
16	2016.7월 통장수당지급	2016.7.19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7.20	1통장외43명	7,490,000
						강○○ (학익1동통장)	1,310,000
17	2016.8월 통장수당지급	2016.8.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8.19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18	2016.9월 통장수당지급	2016.9.19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9.20	1통장외43명	7,490,000
						강○○ (학익1동통장)	1,310,000
19	2016.10월 통장수당지급	2016.10.18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10.20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0	2016.11월 통장수당지급	2016.11.17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11.21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1	2016.12월 통장수당지급	2016.12.19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6.12.20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2	2017.1월 통장수당지급	2017.1.19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1.19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3	2017.2월 통장수당지급	2017.2.17	1통장 외 40명	8,200,000	2017.2.20	1통장외43명	7,380,000
						강○○ (학익1동통장)	820,000
24	2017.3월 통장수당지급	2017.3.20	1통장 외 42명	8,600,000	2017.3.20	1통장외43명	7,740,000
						강○○ (학익1동통장)	860,000
25	2017.4월 통장수당지급	2017.4.21.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4.21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6	2017.5월 통장수당지급	2017.5.23.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5.25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27	2017.6월 통장수당지급	2017.6.20	1통장 외 41명	8,400,000	2017.6.21	1통장외43명	7,560,000
						강○○ (학익1동통장)	840,000
28	2017.7월 통장수당지급	2017.7.21	1통장 외 42명	8,653,320	2017.7.24	1통장외43명	7,793,320
						강○○ (학익1동통장)	860,000

연 번	적 요	품 의			지 출		
		일자	대상	금액(원)	일자	대상	금액(원)
29	2017.8월 통장수당지급	2017.8.21	1통장 외 42명	8,600,000	2017.8.22	1통장외43명	7,740,000
						강○○ (학익1동통장)	860,000
30	2017.9월 통장수당지급	2017.9.20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9.21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31	2017.10월 통장수당지급	2017.10.20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10.23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32	2017.11월 통장수당지급	2017.11.20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7.11.27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33	2017.12월 통장수당지급	2017.12.20	1통장 외 43명	8,600,000	2017.12.26	1통장외43명	7,740,000
						강○○ (학익1동통장)	860,000
34	2018.1월 통장수당지급	2018.1.19	1통장 외 43명	8,722,570	2018.1.19	1통장외43명	7,842,57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35	2018.2월 통장수당지급	2018.2.20	1통장 외 43명	8,800,000	2018.2.22	1통장외43명	7,920,000
						강○○ (학익1동통장)	880,000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세출예산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공공운영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회계

- 지방재정법 제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서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201-01)에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가 있으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고,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 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 학익1동에서는 주민센터 2층 전등교체 공사를 실시하면서 [표]와 같이 시설비로 집행해야 할 공사를 공공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표] 공공운영비 부적정 집행 현황

집행일	집행액	적 요	예산과목		비 고
			편성목	통계목	
2016.05.10	990,000원	학익1동 주민센터 2층 전등 교체공사대금 지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준수하시어 예산집행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업무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급량비 지출 품의 부적정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회계

-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급량비 설정에 의하며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하고 (2016.12.27. 8,000원으로 변경),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 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은 가능하나 품의는 건별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학익1동에서는 2015.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급식비를 집행할 때에는 현금영수증 대금 청구서 건별로 각각 품의를 하여야 하나, [표] 와 같이 2건에서 4건까지 대금청구서를 합하여 한 번에 집행 품의를 하였다.

[표] 급량비 지출 시 일괄 품의 현황

(단위:천원)

연 번	품의일자	적 요	계	차우 차우	김밥 코리아	대청 마루	명인 만두	소풍
1	2015.11.05	15.10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85	177	126	182	-	-
2	2015.12.04	15.1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667	408	56	203	-	-
3	2015.12.28	15.12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79	45	62	172	-	-
4	2016.02.02	16.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59	117	91	250	-	-
5	2016.03.17	16.2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92	118	24	350	-	-

6	2016.04.14	16.3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40	70	-	189	180	-
7	2016.05.10	16.4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187	47	77	-	62	-
8	2016.06.07	16.5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38	-	17	157	63	-
9	2016.07.12	16.6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15	20	-	133	161	-
10	2016.08.01	16.7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88	42	288	-	57	-
11	206.09.08	16.8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43	75	168	-	-	-
12	2016.10.05	16.9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09	43	-	266	-	-
13	2016.11.07	16.10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27	128	195	104	-	-
14	2016.12.06	16.1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09	96	26	187	-	-
15	2017.02.02	17.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84	25	53	192	-	113
16	2017.03.07	17.2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37	-	24	-	-	213
17	2017.04.13	17.3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320	-	112	-	-	208
18	2017.06.16	17.5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92	-	134	86	-	272
19	2017.07.31	17.6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88	-	112	80	-	96
20	2017.09.19	17.7~8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94	-	146	48	-	300
21	2017.11.01	17. 1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421	301	120	-	-	-
22	2017.12.27	17. 1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647	511	-	136	-	-
23	2018.02.09	18. 1월 시간외 급량비지출	288	144	-	144	-	-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 준수하여 예산 집행되도록 관련자 업무
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시정 요구

제 목 말소된 장애인 복지카드 미 회수(미 폐기)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장애인등록법 제 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같은 법 제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해야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같은 법 제 32조 제3항에 따라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증 반환통보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을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러나, 학익1동에서는 장애인등록카드가 말소된 신○○ 등 21명에 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 감사실 현재까지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를 회수 및 폐기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말소된 장애인복지카드 미회수(미폐기)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말소/정지일자	말소/정지 사유	비고
1	신○○	-	2018.02.07	사망말소	
2	김○○	-	2017.12.05	사망말소	
3	김○○	-	2017.09.21	사망말소	
4	박○○	-	2017.08.23	사망말소	
5	김○○	-	2017.06.20	사망말소	
6	박○○	-	2017.05.07	사망말소	

연번	성명	생년월일	말소/정지일자	말소/정지 사유	비고
7	유○○	-	2017.04.21	사망말소	
8	이○○	-	2017.03.31	사망말소	
9	이○○	-	2017.01.10	사망말소	
10	오○○	-	2016.11.29	사망말소	
11	최○○	-	2016.10.12	사망말소	
12	권○○	-	2016.06.03	사망말소	
13	반○○	-	2016.05.17	사망말소	
14	한○○	-	2016.04.05	사망말소	
15	허○○	-	2016.02.19	사망말소	
16	조○○	-	2016.02.10	사망말소	
17	김○○	-	2016.01.29	사망말소	
18	함○○	-	2015.11.29	사망말소	
19	이○○	-	2015.08.21	사망말소	
20	김○○	-	2015.06.23	사망말소	
21	채○○	-	2015.04.03	사망말소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미회수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의 요구

제 목 의사 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소홀

기 관 명 학익1동

관 계 분 야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 의하면 지급된 급여의 관리사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술에 맡겨야 하나(사적자치의 원칙),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 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의 수급자 단독가구(이들로만 구성된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자로 하여금 급여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분(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사회복지통합전산망(행복e음)에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학익1동에서는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 서류 대부분이 통장사본만 첨부되어 있고 급여관리자의 급여 관리 실태 점검 대상인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으며, 2017년 하반기 급여 점검 후 입력기간을 미준수하여 전산입력을 지연하는 등 의사무능(미약)자의 급여 관리 실태 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의사무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확인 소홀

연 번	대상자	생년월일	등록유형	급여관리자			소홀현황
				이름	관계	지정일	
1	양○○	-	18세미만 아동	고○○	기타	2012.07.05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2	임○○	-	정신장애인	임○○	부양 의무자	2012.06.11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3	강○○	-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강○○	친인척	2012.07.05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연 번	대 상 자	생 년 원 일	등 록 유 형	급여관리자			소 호 현 황
				이 름	관 계	지 정 일	
4	김○○	-	치매노인	성○○	부양 의무자	2016.10.17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5	박○○	-	정신장애인	박○○	친인척	2015.06.15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6	박○○	-	18세미만 아동	박○○	2촌이내 직계존비속	2016.10.17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7	남○○	-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남○○	친인척	2012.07.04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8	박○○	-	지적장애	박○○	친인척	2016.06.28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9	김○○	-	정신장애인	김○○	2촌이내 존비속	2012.07.13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10	박○○	-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김○○	친인척	2012.05.10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11	김○○	-	뇌병변	백○○	기타	2017.01.25	2017년 하반기 점검표 미작성 및 전산미입력 작성

조치할 사항 학익1동장은

[주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